



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

[시행 2025. 8. 12.] [외교부령 제148호, 2025. 8. 12., 일부개정]

재외동포청 (동포지원제도과) 032-585-3184

법무부 (법무심의관) 02-2110-3164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재외국민등록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9. 12. 24.]

제2조(재외국민등록신청의 서식) 「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19. 12. 24.]

제3조(재외국민등록부의 서식) 「재외국민등록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07. 11. 19., 2019. 12. 24.>

제4조(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서식)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별지 제3호서식,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9. 12. 24.>

제5조(재외국민등록의 변경 또는 이동 신고의 서식) 법 제8조, 제9조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변경 또는 이동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19. 12. 24.]

제5조의2(귀국신고의 서식) 법 제9조의2 및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귀국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19. 12. 24.]

제6조(수수료)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자는 미화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(국내에서 교부받는 경우에는 600원)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문서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. <개정 2019. 4. 17.>

부칙 <제148호, 2025. 8. 12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